

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

업무협약서

(재)정남테크노파크, 정남대학교, (재)창원산업진흥원, (사)정남ICT협회, (주)글래스돔코리아, IBM, 법무법인(유)지평, 로이드인증원(주)(이하 “각 기관” 이라 한다)은 각 기관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호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 기관의 발전과 지역 산업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각 기관은 상호업무를 존중하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각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.

1. 산업별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
2. 해외 통상 규제 대응 지원 및 공급망 관리·실사 컨설팅 지원
3. 탄소중립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
4. 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를 통한 One-stop 탄소 관리 지원
5.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

제4조(신의성실의 의무) 각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 이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 사항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공개한다.

제6조(기타)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본 협약서는 제4조(비밀유지), 제5조(기타), 제6조(협약의 해지)를 제외하고는, 각 기관의 당사자 간 협력 사항 및 기타 역할의 수행 등 본 협약서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.

③ 본 협약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수여하거나 실사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각 기관의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효력)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24년 11월 13일



원 장 김 정 환

김 정 환



총 장 박 재 규

박 재 규



원 장 이 정 환

이 정 환



회 장 오 양 환

오 양 환



대표이사 함 진 기

J. K. Ham



IBM 한국 대표 김 현 정

김 현 정



대표변호사 양 영 태

(대리) 이 준 희



대표이사 이 일 형

이 일 형